

수원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113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113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199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기복

피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장영재

피고 승계인수인 F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장영재

변론 종결2020. 7. 23.

판결 선고2020. 9. 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199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로부터 196,843,66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22. 접수 제1845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승계인수인이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승계인수인에 대한 승계인수신청을 하여 2020. 4. 13. 승계인수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의 바항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2020. 1. 22. 승계인수인과 사이에 승계인수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 및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승계인수인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2. 3. 접수 제22123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3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다(법정변제충당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1행의 "피고는"을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특정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 및 양도받은 승계인수인은"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인수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장윤식

판사전용수

별지